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63
----------	-------

발의연월일 : 2026. 9. 23.

발 의 자 : 이정현 · 조인철 · 허성무
김우영 · 한민수 · 송기현
이상식 · 한준호 · 손명수
김의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의 위험도에 따라 일부 안전관리 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음에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력 지정 및 안전예산 확보에 관한 기준은 연구현장의 위험수준과 관리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방대한 연구실 안전관리 대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 지원체계도 미흡한 실정임.

최근 연구개발 규모의 확대와 첨단 연구기술의 발전으로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에서 취급하는 유해인자와 연구장비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연구활동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등 고위험연구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연구현장의 위험수준에 맞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연구실의 위험도 분류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고위험 연구실을 중심으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력 지정 및 안전예산 확보

보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연구실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고위험연구실”이란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인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을 말한다.

제8조제3항 중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가”를 “중앙연구안전지원센터가”로 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을 “소속 연구활동종사자 중 1명 이상을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고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소속 연구활동종사자 중 1명 이상을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를 “제1호에 따른 기준과 제2호에 따른 기준을 더하여 산정한 인원 수만큼”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

가.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나.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경우: 2명 이상

다. 연구활동종사자가 3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

2. 고위험연구실

가. 고위험연구실이 10개 이상 250개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나. 고위험연구실이 250개 이상인 경우: 2명(고위험연구실이 25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50개마다 1명을 더하여 계산한다) 이상

제12조제1항제4호 중 “실시에”를 “실시 및 교육 이수율 제고에”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수립에 관한 사항

11. 연구실 안전관리에 기여한 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고위험연구실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평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제10조제1항”을 “연구주체의 장(제2조제1호가목의 기관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책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비율 이상을 제2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고위험연구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과제 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3
2. 그 외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과제 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2

제25조제1항제6호 중 “연구주체의 장”을 “연구주체의 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연구활동종사자는”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또는 연구활동종사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연구활동종사자에”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또는 연구활동종사자에”로 한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집행을 연구주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의 제목 중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를 “중앙연구안전지원센

터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를 “안전관리와 신속한 연구실사고 대응 등을 위하여 중앙연구안전지원센터 및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이하 “연구안전지원센터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를 “연구안전지원센터등의”로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안전지원센터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연구안전지원센터등에 대한 감독) ① 연구안전지원센터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안전지원센터등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안전지원센터등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안전지원센터등에 대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안전지원센터등의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주체의 장에게”를 “연구주체의

장,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제4호·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고위험연구실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를 “연구안전지원센터등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7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제42조제2호 중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를 “연구안전지원센터등의”로 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연구과제”를 “연구개발과제”로, “연구비를”을 “연구개발비를”로, “일정”을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으로 한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속 연구활동종사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 이상의 상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하게 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연구활동종사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 이상의 상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하게 한 자
7.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관 연구실에 필요한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 및 집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주체의 장의 전문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 임명되어 보직을 맡은 연구주체의
장에게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 <u>고위험연구실</u> ”이란 연구 <u>활동종사자의 건강에 위험을</u> <u>초래할 수 있는 유해인자 중</u> <u>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u> <u>하는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u> <u>구실을 말한다.</u>
3. ~ 14. (생략) 제8조(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① · ② (생략) ③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은 제 30조에 따라 지정된 <u>권역별연</u> <u>구안전지원센터가</u> 운영하여야 한다. ④ ~ ⑦ (생략)	3. ~ 14. (현행과 같음) 제8조(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중앙연구</u> <u>안전지원센터가</u> -----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① (생략) ②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 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연구실</u> <u>안전관리담당자를</u> 지정할 수 있다. <u>이 경우 연구실안전관리</u>	제9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소속 연구</u> <u>활동종사자 중 1명 이상을 연</u> <u>구실안전관리담당자로</u> -----

담당자는 해당 연구실의 연구
활동종사자로 한다. <단서 신
설>

③·④ (생략)

제10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① 연구주체의 장은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
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
야 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
만인 경우: 1명 이상

2.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이
상 3천명 미만인 경우: 2명
이상

3. 연구활동종사자가 3천명 이
상인 경우: 3명 이상

----- . <후단 삭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고위험연구실의 경우
에는 소속 연구활동종사자 중
1명 이상을 연구실안전관리담
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① -----제1
호에 따른 기준과 제2호에 따
른 기준을 더하여 산정한 인원
수만큼-----

1. 연구활동종사자

가.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나.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경우:
2명 이상

다. 연구활동종사자가 3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

2. 고위험연구실

가. 고위험연구실이 10개 이
상 250개 미만인 경우: 1
명 이상

나. 고위험연구실이 250개 이

② ~ ⑥ (생략)

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 3. (생략)

4. 안전교육의 주기적 실시에 관한 사항

5. ~ 9.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상인 경우: 2명(고위험연구실이 25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50개마다 1명을 더하여 계산한다) 이상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실시 및 교육 이수율 제고에-----

5. ~ 9. (현행과 같음)

10.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안전 조치 수립에 관한 사항

11. 연구실 안전관리에 기여한 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고위험연구실에 대한 안전

<u>10. (생 략)</u> <u>② · ③ (생 략)</u> <u><신 설></u>	<u>관리 방안</u> <u>13. (현행 제10호와 같음)</u> <u>② · ③ (현행과 같음)</u> <u>제17조의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u> <u>진단 대행기관의 평가 등) ①</u>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u> <u>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대행</u> <u>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u> <u>과를 공개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u> <u>· 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u> <u>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u> <u>령으로 정한다.</u>
제20조(교육 · 훈련) ① · ② (생 략) ③ <u>제10조제1항 · 제2항에 따라</u> <u>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u> <u>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u> <u>육을 받아야 한다.</u> ④ · ⑤ (생 략) 제22조(비용의 부담 등) ① · ② (생 략) ③ <u>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u> <u>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u>	제20조(교육 · 훈련) ① · ② (현행 과 같음) ③ <u>연구주체의 장(제2조제1호</u> <u>가목의 기관으로 한정한다) 및</u> <u>제10조제1항</u>----- ----- ----- -----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비용의 부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연구주체의 장은 「국가연</u> <u>구개발혁신법」 제2조제2호에</u>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제2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에
배정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제3항에 따른 안전 관련 예
산의 배정비율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연구실 사용제한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제14조 및 제
15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제
24조에 따른 연구실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긴

따른 연구개발과제 또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
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
업·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
라 한다) 수행을 위한 연구개
발비를 책정할 때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른 비율 이상을
제2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
련 예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고위험연구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과제

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3

2. 그 외 연구개발과제: 연구개
발과제 인건비 총액의 100분
의 2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5조(연구실 사용제한 등) ① -

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그 밖에 연구주체의 장 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조치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의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주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연구활동종

-.

1. ~ 5. (현행과 같음)

6. -----연구주체의 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또는 연구활동종사자는-----

-----.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집행을 연구주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
-----연구실안전환

사자에 대하여 그 조치의 결과를 이유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생략)

제30조(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효율적인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③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경관리자 또는 연구활동종사자에-----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0조(중앙연구안전지원센터 등의 지정·운영) ① -----
---안전관리와 신속한 연구실 사고 대응 등을 위하여 중앙연구안전지원센터 및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이하 “연구안전지원센터등”이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안전지원센터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연구안전지원센터등의-----

제30조의2(연구안전지원센터등에 대한 감독) ① 연구안전지원센터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3조(시정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구주체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2. (생략)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안전지원센터등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안전지원센터등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안전지원센터등에 대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안전지원센터등의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시정명령) ① -----

연구주체의 장,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1.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제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고위험연구실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u><신 설></u> 3. · 4. (생 략)	4.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u><신 설></u> 5. (생 략)	5. · 6.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7.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u><신 설></u> 6. ~ 8. (생 략) ② (생 략) 제41조(권한 · 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0조에	8. (현행 제5호와 같음) 9.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10. ~ 12. (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권한 · 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따른 <u>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u> 에 위탁할 수 있다. 1. · 2. (생 략) <신 설> 3. ~ 7. (생 략) ③ (생 략)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 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생 략) 2.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 은 업무에 종사하는 <u>권역별연 구안전지원센터의</u> 임직원 3. (생 략) 제46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u>연구안전지원센터등에</u>----- -----. 1. · 2. (현행과 같음) 3. 제17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업무 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 호까지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 ----- ----- ----- -----. 1. (현행과 같음) 2. ----- -----<u>연구안전 지원센터등의</u>----- 3. (현행과 같음) 제4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속 <u>연구활동종사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해 이상의 상해를 입은</u>
--	---

<신 설>

1. (생 략)

<신 설>

2. · 3. (생 략)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 8. (생 략)

9.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관 연구실에 필요한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 및 집행하지

연구실사고가 발생하게 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현행 제1호와 같음)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연구활동종사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 이상의 상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하게 한 자

5. · 6.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7.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관 연구실에 필요한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 및 집행하지 아니한 자

③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 8. (현행과 같음)

<삭 제>

<u>아니한 자</u>	
10.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u>연구과제</u> 수행을 위한 <u>연구비를</u> 책정할 때 <u>일정</u> 비율 이상을 안전 관련 예산에 배정하지 아니한 자	10. ----- <u>연구개발과제</u> ----- <u>연구개발비를</u> ----- <u>같은</u> <u>항</u> <u>각 호의 기준에 따른</u> ----- ----- -----
11. ~ 14. (생략)	11. ~ 14.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